청소년활동안전공제(단체) 안내 자료

□ 개요

○ 사업목적

-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·적정 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

<사업시행근거>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9조 (공제중앙회의 사업) 제1항제6호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

○ 가입대상

-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**청소년단체**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**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**
-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추천 단체,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인정하는 단체

○ 피공제자

-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1호 또는 「청소년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<u>청소년</u>
-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7호에 따른 **청소년지도자***
 - * 청소년지도사. 청소년상담사.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자
- 1일 단위의 단기 계약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

○ 보장기간

- 정기가입: 1.1 ~ 12.31.(1년)
- 단기가입: 청소년활동 청약 기간
- 공제료 (※ 청소년, 청소년 지도자 동일)
 - 정기가입: 1인당 2,500원
 - 단기가입: 청소년·청소년지도자 1일당 200원

청소년활동참여자 1일당 500원

○ 보상범위

- 청소년단체장의 관리·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·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로 인한 손해
- 청소년단체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
 - 가. 청소년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
 - 나. 일사병
 - 다.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
 - 라.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
 - 마.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-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

○ 보상한도

	구분	보상한도	
	ᅯᄉᄖ	○ 1인당 보상한도 : 10억원 한도(요양간병·장해·유족급여, 장의비 등 포함)	
	청소년, >년 지도자	○ 1사고당 보상한도 : 20억원	
청소년 지도자		ㅇ 재물피해 : 1사고당 200만원	
단기	청소년, 청소년 지도자	○ 1인당 보상한도 : 10억원 한도(요양간병·장해·유족급여, 장의비 등 포함) ○ 1사고당 보상한도 : 20억원	
가입	청소년활동 참여자	○ 사망·장해 1억5천만원, 부상 3천만원 ※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시행령 제13조제2항 준용	
ਜ਼ਹਿਸ	1 교원 메시	○ 1인당 보상한도(인적사고): 사망・장해: 1억5천만원, 상해 3천만원	
제3자 피해 배상 		○ 1사고당 보상한도(인적/물적 사고) : 20억원/1억원	

○ 가입 방법

	정기가입	단기가입
가입대상	연간 정기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청소년 활동 참여자	정기가입이 되어있는 활동에 한하여정기계획 중 일부 활동에만 참여하는청소년활동 참여자
가입방법	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(https://ssifins.schoolsafe.or.kr:4443/sws/)에 청약 신청	

※ 수영, 스키, 스카이다이빙 등 고위험도 활동은 정기가입을 통해서만 보장 가능

○ 사고처리 및 보상 절차



① 사고통지	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<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*>에 입력 * 공제중앙회 홈페이지(ssif.or.kr) → [중앙회 공제사업] → 중앙회 업무처리시스템 (사고통지·공제급여) 클릭	
② 사고통지 접수	사고통지 접수·보완·반려	
③ 공제급여 청구	청구서류 파일을 <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>에 첨부하여 청구	
④ 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	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※ 단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일만큼 연장 가능	
⑤ 공제급여 지급	·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지급 · 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(공문 발송)	
⑤-1 이의신청	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 우편발송	
⑤-2 심의결정 및 통보	·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 심의 실시 ※ 단,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· 심의일로부터 2주 이내 재결서 통보(등기우편)	